

< 수시 공시 >

2013.01.28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 가격	발생 일자	50 억 미만 시작일
1	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7호(채권혼합)	2,212,431,694	2,237,342,492	1011.26	2013.01.25	2011.12.26.
2	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9호(채권혼합)	2,209,058,176	2,277,628,709	1031.04	2013.01.25	2011.12.26.
3	신영프리미엄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1,142,877,182	1,140,800,976	998.18	2013.01.25	2011.04.26.
4	신영코리아밸류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2,127,698,878	2,179,731,392	1024.45	2013.01.27	2011.12.28.
5	신영밸류우선주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A형	810,788,018	813,652,855	1003.53	2013.01.27	2012.05.28.
6	신영밸류우선주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C형	1,196,025,729	1,194,221,954	998.49	2013.01.27	2012.05.28.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

3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